

제 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단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2021. 9. 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8014호, '21.5.20.시행)의 결산 개정 사항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5851호, '21.5.24.)에 따른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 내용 정비 (안 제29조제1항)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21.5.20.시행)에 결산서 등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됨바, 정관에 규정된 시장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의 내용을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킴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생략)

[본조신설 2021. 5. 20.]

○ 기구표 및 정원표 신설 (안 제31조, <별표 3>, <별표 4>)

- 재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용을 <별표 3> 기구표 및 <별표 4> 정원표로 신설하고 안 제31조에 명시함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5851),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안내'(공기업담당관-7745) 점검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21.5.24.)

주요 점검사항

○ 조직 및 정원 현행화

- 기구표 및 정원표의 정관 기재여부, 직제규정과의 내용 일치여부 등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5851, '21.5.24.)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서울특별시 시장 승인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보건복지부 허가 및 시행
일정	'21.8월 초		9월 초순		9월 중순		10월 초순

※ 현행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절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 보고(안)에 대한 시 사전 승인 진행 완료

【추진절차 관련 근거】

1. 시의회 상임위 보고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정관) 제3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 승인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보건복지부 허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35조(정관의 변경)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첨부

-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붙임2] 「서울시보 제3678호(2021.5.20.(목))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분 발췌
- [붙임3]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안내’ 공문 1부.
- [붙임4] 현행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1부.
- [붙임5]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1부.

현 행	개 정																				
<p><신 설></p>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표</p> <p>가. 총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정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표이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문서비스직</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능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7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24</td> <td style="text-align: center;">33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body> </table> <p>나.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2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3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4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5~6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188</td> </tr> </tbody> </table> <p>다. 전문서비스직 : 335명</p> <p>라. 기능직 : 12명</p>	총정원	대표이사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전문서비스직	기능직	572	1	224	335	12	계	2급	3급	4급	5~6급	224	2	2	32	188
총정원	대표이사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전문서비스직	기능직																	
572	1	224	335	12																	
계	2급	3급	4급	5~6급																	
224	2	2	32	188																	

【붙임2】 서울시보 제3678호(2021.5.20.(목))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분 발췌

◆ 서울특별시조례 제8014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업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③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규정함(제13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붙임3】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안내」 공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안내

1. 공기업담당관-5901('21.5.26.)호와 관련입니다.
2. 투자출연기관의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별 제출하여 주신 규정현황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일정 강안하여 기한 내 정비완료(10월내 점검 예정)
 - 관련내용을 개정 또는 재정시 정비기준에 부합토록 추진
 - 정비결과 경영평가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 추진 철저
3. 각 기관에서는 현황점검 결과에 대하여 미완료로 분류된 항목 중에서 안료를 소명하고자 할 경우 사유를 기재(소명자료 별첨)하여 담당주무관(천재희 주무관 참조)에게 7월 16일(금)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관별 규정 현황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권재희 ★공기업총괄팀장 유재우 공기업담당관 김미영 07/14

합조자 이혜진 공기업2팀장 정홍혜 공기업3팀장 김미연

시행 공기업담당관-7745 (2021-07-14)

합수 경영기획팀-3387 (2021.7.21.)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66 전속 02-2133-0864 / joyoe0514@seoul.go.kr

/ 부면공개 (5)

【붙임4】 현행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보건복지부 허가) 2019. 2. 27.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8.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SEOU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 “SEOUL P.A.S.S.”)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0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0. 7.>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가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시 복지기획관
2. 시 재정기획관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노동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0. 10. 7.>

⑤ 감사 2명중 1명은 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⑥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2.>

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노무사
7.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 ②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재단의 규정에서 정하는 노동자투표 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 ④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⑤ 이어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4.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금지원 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의 의결권은 서면결의나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당해 이사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20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③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및 현행 기본재산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려는 경우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축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입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재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1부
2.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1부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8. 2.>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

-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6장 조직 및 직원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해산) ①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市報)에 이를 게재한다.

제38조(규정 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정원,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개정 2020. 10.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정관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근로자 이사는 재단 설립 후 1년 내에

임명하며, 선임 및 임명 방법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0. 10. 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금 (예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설립출연

〈별표 2〉

현행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금 (예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현행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와 같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보건복지부 허가) 2019. 2. 27.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8. 2.

(개정) 2021.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SEOU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 “SEOUL P.A.S.S.”)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0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0. 7.>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가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시 복지기획관
2. 시 재정기획관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노동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0. 10. 7.>

⑤ 감사 2명중 1명은 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⑥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2.>

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노무사
7.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②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재단의 규정에서 정하는 노동자투표 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④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⑤ 이어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4.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금지원 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의 의결권은 서면결의나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당해 이사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20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③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및 현행 기본재산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려는 경우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입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재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00. 00.>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개정 2021. 00. 00.>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개정 2021. 00. 00.>
3. <삭제 2021. 00. 00.>
4. <삭제 2021. 00. 00.>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

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8. 2.>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6장 조직 및 직원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3, 정원은 별표4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0. 00.>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해산) ①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市報)에 이를 게재한다.

제38조(규정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정원,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개정 2020. 10.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정관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근로자 이사는 재단 설립 후 1년 내에 임명하며, 선임 및 임명 방법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0. 10. 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0. 0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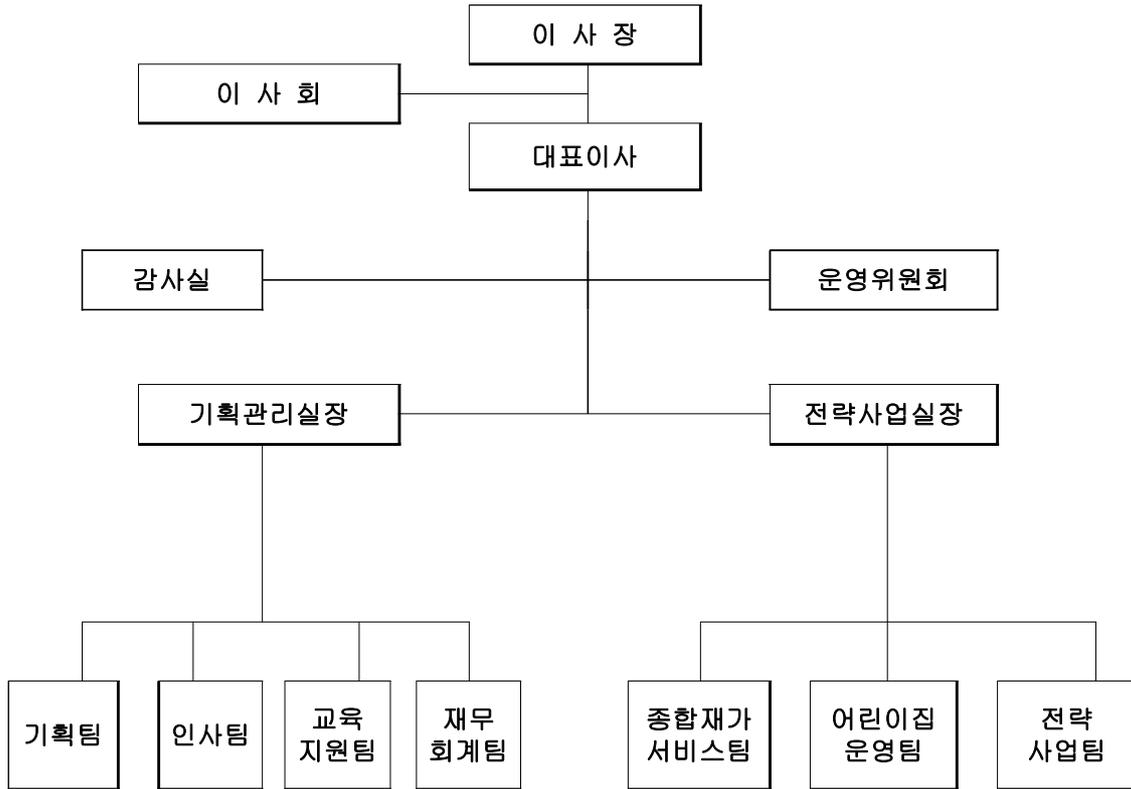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금 (예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설립출연

〈별표 2〉

현행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금 (예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현행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와 같음

기구표



〈별표 4〉 〈신설 2021.00.00.〉

정원표

가. 총괄표

총정원	대표이사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전문서비스직	기능직
572	1	224	335	12

나.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계	2급	3급	4급	5~6급
224	2	2	32	188

다. 전문서비스직 : 335명

라. 기능직 : 12명